

## [사 건 명] 행심 2015-22

###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6.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교내봉사 5일 등』 처분을 취소하고 『교내 봉사 3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6.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재결이유]

#### I.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폭력에 대해 2015. 6.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5. 6. 18.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5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3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5. 6. 2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5. 7.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 청구인은 ○○○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 학생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폭력이 인정되는 이상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인정될 수 없고, 비록 ○○○의 원인이 제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은 운동하다가 실수로 청구인의 다친 무릎을 차게 된 것이며, 폭력의 정도나 ○○○의 피해정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인 만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5. 6. 10. 경 학교주차장에서 원바운드 놀이를 하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원바운드 놀이를 하다가 ○○○○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이 청구인의 다친 다리를 차게 되었다.
- 2) 이후 청구인은 ○○○○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 청구인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계속 사과를 요구하였고, ○○○○은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지만, 나중에는 사과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욕을 하였다.
- 3) 이후 청구인과 ○○○○은 서로 언쟁이 있었고, 청구인은 ○○○○을 폭행하여 ○○○○의 안경이 벗겨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여러 증거에 비추어볼 때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 학생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사과과정에서 ○○○○ 학생이 욕을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의 경우에 평소 학교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수

상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은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5일 및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3일의 처분으로 병과 되어 있는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만 병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은 청구인이 ○○○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게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인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교내봉사5일 및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3일의 처분을 『교내봉사 3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1일』로 감경하여 처분 한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가중한 만큼,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